

## 「2023 벤처투자활성화 유공 포상」 지원자격 및 심사안내

### □ 신청 자격

- 벤처투자조합 출자기관의 출자관련 업무담당 임직원(기관/단체 신청 불가)

### □ 심사 절차

- (기본요건 심사) VC협회는 중기부장관 표창 지침상의 추천제한 해당여부와 신청자격 보유여부 등 기본요건\*에 대한 심사 실시
  - \* 기본요건 적부 심사항목 중 "부" 항목이 있는 경우는 탈락
- (서류 심사) 포상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개인의 근속연수, 소속기관의 벤처투자조합 출자실적\* 등을 평가(심사배점 비중 20%)
  - \* 단, 경영지배구조상 계열사 및 자회사가 GP로 참여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함
- (종합 심사) 포상심사위원회\*를 개최하여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기여도,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공헌도, 벤처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(심사배점 비중 80%)
  - \* 정부, 협회,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5인 이내의 평가위원 선임
- (수상자 확정) VC협회는 심사를 통해 확정된 종합 순위표 및 포상후보자 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중기부에 제출
  - 중기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검증을 거쳐 유공자 최종 확정

## ◆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◆

- ※ 정부포상(훈.포장, 표창)의 경우, 행정자치부 '정부포상 업무지침'을 준용하며, 그 외 기관표창의 경우, 기관별 정해진 포상 기준을 따름
- ※ 중소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(개인)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, 포상신청서 제출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
### □ 포상기준

#### ○ 수공기간

-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표창(국무총리 이상)은 5년 이상,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#### ○ 중복 수여의 금지

- 상훈법 제4조(중복 수여의 금지),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(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)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

#### ○ 재포상 금지 \* 기준일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**훈장 7년 이상, 포장 5년 이상, 대통령·국무총리 표창 3년 이상, 장관 표창 2년 이상**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## □ 추천제한

### ○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
### ○ 형사처분

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\*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

\*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

### ○ 「상훈법」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\*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  - \*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 - \*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을 통해 확인 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 검색 - 사업보고서 -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
  - \*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 - \*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「공정거래관련법」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- \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위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 가능
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 불자료가 제공된 자
  - 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 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  - \*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 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 접 조회하여 확인(<https://www.share.go.kr>)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 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